

약관변경대비표

1. 약관명 : 『세금우대 종합저축 특약』
2. 변경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주요 변경내용 : (구)외환은행 약관 제3조 가입대상저축 대상 추가 및 문구 정비

(구)하나은행 약관을 (구)외환은행 약관 변경 반영하여 구행명 삭제 후 통합약관으로 개정

개정 전 (구.하나은행)	개정 후	비 고
<p>제1조 (약관의 적용) ~ 제2조 (가입대상) (생략)</p> <p>제3조 (가입대상저축) 취급하는 1년 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u>저축</u>, 금전신탁, 수익증권, 채권저축(이하 '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4조 (세금우대 요건) ~ 제7조 (세금우대 처리) (생략)</p> <p>제8조 (표시방법) 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내지·거래내역서 등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제9조 (적용이율) ~ 제11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정보제공) (생략)</p>	<p>제1조 (약관의 적용) ~ 제2조 (가입대상) (좌동)</p> <p>제3조 (가입대상저축) <u>이 저축은 은행이</u> 취급하는 1년 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u>예금</u>, 금전신탁, 수익증권, 채권저축(이하 '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4조(세금우대 요건) ~ 제7조(세금우대 처리) (좌동)</p> <p>제8조 (표시방법) <u>은행은</u> 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내지·거래내역서 등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적용이율)~제11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정보제공) (좌동)</p>	<p>(문구 정비)</p> <p>(문구 정비)</p>

개정 전 (구.외환은행)	개정 후	비 고
<p>제1조 (약관의 적용) 세금우대종합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예금거래기본약관</u>(구 외환은행), <u>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u>(구 외환은행), <u>적립식예금약관</u>(구 외환은행), <u>거치식예금약관</u>(구 외환은행), <u>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u>(구 외환은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저축 등의</p>	<p>제1조 (약관의 적용) ~ 세금우대종합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예금거래기본약관</u>, <u>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u>, <u>적립식예금약관</u>, <u>거치식예금약관</u>, <u>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u>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저축 등의 개별약관에 따른다.</p>	<p>(구 행명 삭제)</p>

<p>개별약관에 따른다.</p> <p>제2조 (가입대상) (생략)</p> <p>제3조 (가입대상저축) 이 저축은 은행이 취급하는 1년 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 금전신탁(이하 '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4조 (세금우대 요건) (생략)</p> <p>제5조 (거래한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거래한도는~이 경우 원가금액은 제외되고 한도를~산정하며, 저축자와~ 산정한다. 1. 거치식예금은 <u>저축자</u>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한다. 2. (생략) 3. (생략)</p> <p>제6조 (거래한도 변경) ~ 제9조 (적용이율) (생략)</p> <p>제10조 (특별중도해지) 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저축자가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전 6월 이내에</u>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언 ② (생략)</p> <p>제11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정보제공) ①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취급하는 <u>은행</u>은 전국은</p>	<p>제2조 (가입대상) (좌동)</p> <p>제3조 (가입대상저축) 이 저축은 은행이 취급하는 1년 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 금전신탁, <u>수익증권, 채권저축</u>(이하 '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4조(세금우대 요건) (좌동)</p> <p>제5조 (거래한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거래한도는~이 경우 원가금액은 제외<u>하고</u> 한도를~산정하며,저축자와~산정한다. 1. 거치식예금은 <u>거래처</u>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한다. 2. (좌동) 3. (좌동)</p> <p>제6조 (거래한도 변경) ~ 제9조 (적용이율) (좌동)</p> <p>제10조 (특별중도해지) 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거래처가</u>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u>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u> <u>2. 천재·지변</u> <u>3. 저축자의 퇴직</u> <u>4. 사업장의 폐업</u> <u>5.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u> <u>6. 저축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언</u> ② (좌동)</p> <p>제11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정보제공) ① 세금우대종합<u>저축</u>을 취급하는 <u>금융기관</u>은</p>	<p>(구.하나 기준_ 가입대상 저축 추가)</p> <p>(구.하나 기준으로 문구 정비)</p> <p>(상동)</p> <p>(상동)</p>
--	---	---

<p>행연합회에 고객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출하고, <u>저축자</u>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p> <p>② <u>은행</u>은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때에는 <u>저축자</u>(수익자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출하고, <u>거래처</u>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p> <p>② <u>금융기관</u>은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때에는 <u>거래처</u>(수익자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p>	
--	--	--